

1970~80년대 농촌사회의 금전거래와

신용체계의 변화:

『창평일기』를 중심으로*

이성호**·안승택***

이 논문은 『창평일기』를 자료로 1970~80년대 농촌주민의 금전거래를 검토하면서, 농촌사회의 신용체계의 특성과 그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농촌주민들 사이의 전통적 금전거래는 전근대적, 비합리적 고리대이고, 농협을 통해 공급된 공금융은 근대적, 공식적, 합리적 신용체계에 기반을 둔다는 도식적 접근은 농촌사회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회관계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공금융은 공동체사회의 전통적 신용체계를 기반으로 농촌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근대 금융이 요구하는 공식적 신용증명은 공동체관계의 제도화된 형식이었다. 마을주민들 사이의 돈거래와 마찬가지로 농협 대출도 주민들에게는 혜택으로 인식되었고, 주민들은 농협 대출에서 요구하는 보증과 담보를 주민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의 연장이라고 인식하였다. 심지어 농협은 마을의 행정단위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공동체신용’ 또는 ‘연대신용’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적 거래와 근대적 시장거래는 서로의 특징들을 수용하면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버무려 독특한 신용체계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461).

** 전북대학교 SSK개인기록연구단 전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를 만들어낸다.

〈주요개념〉: 농촌사회, 금전거래, 외상거래, 사채, 공금융, 신용체계

1. 문제의 제기

이 논문은 개발독재 체제 아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성장 하던 1970~80년대 한국의 한 농촌에서 기록된 생활일기를 토대로, 촌락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금전부채(money debt)가 하는 ‘사회적’인 일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획은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이항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세부 과제를 통해 그 문제의식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 농민착취라 비난받았으나 착취행위로서의 실체는 불분명했던 ‘전통적’인 농어촌 고리채가 자본주의 하 현대농촌사회에서 지속되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② 공금융 공급을 통해 이를 대체하는 존재로 기대하거나 평가되었던 농협 중심 금융체계의 ‘근대적’인 성격이 세부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전의 ‘전통적’인 부채거래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가. ③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역사적·문화적 맥락 위에서, 어떻게 이 과정 전체를 ‘사회에 묻힌 것으로서의 경제’라는 틀(폴라니 2009[1944]) 안에서 이해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문화적·도덕적 토대에서 형성된 부채관계가 다시 그 토대를 바꾸는 과정(백진영 2014)으로 설명해낼 것인가.

해방 이후 농가부채, 특히 고리 사채는 농민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50년대의 농촌 현실을 분석한 한 연구(주봉규 1958: 72-77)는 당시 농촌

부채의 약 87%가 악성 고금리 사채로 이루어져 있고, 사채의 대부분이 소비에 충당되는 비생산적 부채라는 점을 농민 생활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¹⁾ 이런 인식이 공식적·비공식적 언설 속에 주요 담론으로 존재했기에, 민심이 호응할 수 있는 지점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했던 쿠데타 세력은 1961년 ‘농어촌 고리채정리사업’을 통해 전격적으로 농촌의 사채시장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당시 군사정부는 “농어촌고리채의 제거 없이 농가경제의 향상을 기할 수 없”(한국은행 1961: 14)다고 선언하고, 농민과 고금리 사채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조치를 급격히 단행했다. 이와 동시에 군사정부는 오랜 쟁점이었던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의 통합을 결정하고 1961년 8월 농협중앙회를 창립하였다. 군사정부의 농업은행과 농협의 통합·창립은 농어촌 고리채정리사업의 추진과 연계되어 있었다(전재호 2010: 44).

그러나 농어촌 고리채정리사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²⁾ 우선 정책적으로 애초에 선언되었던 과도한 목표가 바로 철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1961년 겨울 이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농촌의 사채시장이 복구되어 왕성한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그 실패의 원인으로는 고리채정리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농업금융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는 농협 자금력 문제와 정책적 미비가 지적되기도 하고(농협중앙회조사부 1965), 사채는 농촌사회의

-
- 1) “부채 없는 농가는 거의 없으며 부채의 성격도 소비부채가 압도적이고, 생산을 위한 부채 비중은 작다. 국가의 영농자금 지원은 미미하고, 이를 대신하는 것은 고리부채가 대부분이다. 절량농가는 농촌 일반에 파급되어 있다. 영세농의 절량은 물론이고, 중농에 있어서도 식량 사정은 결코 윤택하지 않다. 상환미와 토지수득세는 농민에게 식생활을 보장하지 않을 만큼 현실적으로 과중하다. 절량의 보충의 길은 초근목피와 부채의 길밖에 없다”(김준보 1956; 허은 2006: 12에서 재인용).
 - 2) 한도현(1999: 119)은 ‘농어촌고리채정리’가 “미시적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해도 농촌금융의 개선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에서 저리의 공공용 용자가 사채를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이것과 고리채정리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그는 설명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인간관계(이만갑 1973: 305) 또는 전통적 신용체계를 기반으로 한 생계의 안전망(이명휘 2010)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또 이런 농촌사회학적, 또는 정치경제학적 내지 제도경제학적 논의 외에 순수 경제학적 논의 안에서도, 농촌사회 내 사채의 순기능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의 물가 상승률과 위험률 등을 고려하면 약 40% 가량의 사채 이자는 농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거나(곽병섭 1981: 75), 공금융이 농업부문의 고정비용을 지원하고 단기 운영자금과 생계비는 사채가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지적(콜·박영철 1984: 5장)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 쉽지만 그 세부적인 지점에 대한 평가는 이 글의 목적에서 벗어난다. 분명한 것은 1961년의 농어촌 고리채정리사업은 민심이 호응할 수 있는 지점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쿠데타 세력이, 실행 상 역량의 한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의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의 사회적 조건을 배경으로 ‘근대화’의 명목 아래 급조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아젠다로 제시된 농가부채에 대한 인식은 이후의 농업정책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현실에서 ‘농촌 고리채’의 잔존·지속 현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의 필요를 자각하지조차 않은 채, 이후 한국사회에서 이 시기 농가 부채의 문제를 설명하는 기본틀로서 유지, 재생산되어 왔던 것이다.³⁾

3) 순수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농가부채는 농업경영을 위한 차입금과 농업생산물로부터 얻어지는 이윤의 격차에서 발생한다. 즉 차입금을 농업생산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적정 이윤을 얻고, 그것으로 차입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면, 농가부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가부채 문제는 부채의 이자가 (농업의 생산성보다) 너무 높거나, 농업부문에서 얻어지는 이윤이 (이자에 비해) 너무 낮은 데서 발생한다(김영철 1979; 박준서 1976; 유명서 1998; 이진열 1990; 최세균 1990; 황홍도 2002 등). 이 경우, 농가부채의 해결 방법은 공금융을 통해서 보다 낮은 이자율로 농업자금을 공급하거나, 재료, 원료, 기술, 도구 등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농업 생산비를 (이자율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따르면, 농업생산자금은 농업의 저

그러나 1961년의 농어촌 고리채정리사업과 1972년의 ‘8·3조치’ 등 대대적인 국가의 사채 통제와 저리의 공급용 공급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농촌의 사채 거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도 지속되었다(농림부 각년도). 이는 무엇보다도 1970~80년대 저리의 공급용 공급이 농촌사회의 고질적인 고리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기대를 거스르는 결과였다. 이에 대한 손쉬운 설명은 쿠데타 세력이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공동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지나치게 관념적인 ‘근대화’의 목표를 설정한 결과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이후 금융개혁 정책은 구래의 관행을 받아들이는 보다 온건한 방향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이명휘 2010). 실제로 군사정부는 “반봉건적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농촌사회를 근대적 자각과 경제적 번영으로 이끌 동기를 마련”하고, “전통적인 비민주적, 주종적 인간관계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리채정리사업의 목적을 밝혔다(국가재건최고회의 1962; 이명휘 2010: 87에서 재인용). 이렇게 반봉건적, 전통적 인간관계와 근대적, 경제적 자각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인식이 그동안 농촌사회의 금전거래를 바라보는 기본틀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글이 분석대상으로 삼는 1970~80년대 농촌사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시기의 금전거래 양상이 군사정부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특징들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통적 사회관계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사이의 관계나 차이에 대한 1960년대 군사정부 식의 이분법적 인식이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가령 ‘반봉건적·전통적·비민주적·주종적’ 경제현상이라고 불리던 농촌의 고리대는 이미 자

수익성, 생산의 장기성 등 때문에 낮은 이자율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일반자금은 고리이기 때문에 저리의 중장기 농업자금 공급을 통해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했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11: 54-55). 소위 말하는 ‘농촌 고리채’에 대한 상투적인 비판은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본주의적 시장체계에 흡수된 채 존재했고, 도시화와 광범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사회에서 인구의 이동과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도 남아 있었다. ‘전통적’ 금전거래라고 불리던 농촌사회의 사채거래는 일면적인 ‘공동체적·호혜적’ 양상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의 개인적 신용관계를 기초로 대단히 ‘타산적’이고 ‘개인적’인 지평 위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시대착오·장소착오의 오류는 비단 ‘근대화론’의 견지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데올로기나 정책집행자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가령 그레이버(2011: 579)는 국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농촌 마을에서 신용은 명예와 평판의 문제라는 논의를 전개한다. 이에 따르면, 명예가 어느 정도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을 평가하는 도덕적 기준이라면, 평판은 채권자 또는 잠재적 채권자가 타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서로의 형편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은 신용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농촌사회에서의 주민 간 금전거래는 경제적 상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신용체계에 의존한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 그렇지만 이와 대비되어 시장은 “상호부조와 연대라는 역사 깊은 시스템이 깨지는 냉혹한 계산의 세계”(그레이버 2011: 580)라고 파악되는바, 이 역시 호혜적·공동체적 농촌경제와 타산적·개인적 시장경제라는 이분법적 인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부채와 이자의 ‘근대성’을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게 될 소지가 있다.

이것이 과도한 이항대립적 구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한편으로 ‘전통적’ 교환체계가 지니는 타산적·개인적 계기에 대해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근대적’ 교환체계가 지니는 호혜적·공동체적 계기에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물론 공공용의 공급을 통해 농촌사회에 도입된 근대적 금융체계는 기존의 지역적 신용체

계를 변화시키며, 이때의 ‘공동체적’ 계기는 이전 시기에 그것이 불러일으켰던 것과는 다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가령 공금융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농촌사회에서 사채거래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공금융의 공급 증가가 농촌사회에 ‘개인의 상환능력’에 기반을 두는 근대적 신용체계에 기초하여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돈거래 관행을 확립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뒤에서 차차 드러나겠지만, 근대적 신용이 개인의 상환능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적어도 1970~80년대의 농업자금 공급이 근대적 신용체계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농촌사회의 집단적, 공동체적 연대관계를 공적 신용체계의 형식 속으로 끌어들이며, 부채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적 부담을 강화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과정의 논리와 양상의 특징,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 한국 사회와 문화의 전개라는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이 논문은 여기에서 출발하여, 사채의 고리를 끊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고리의 사채거래가 농촌사회에서 지속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농협을 통해서 공급된 저리의 공금융이 농민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농민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른바 농촌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성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호혜적, 인격적 관계와 시장경제와 근대 금융의 확립의 조건이라고 간주되는 개인적, 비인격적 신용체계 사이의 구분이 생활세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시장 거래에서도 인격적, 호혜적 관계는 존재하고 또 필요하며, 반대로 농촌사회의 전통적 사회관계에서도 그 사회적, 문화적 조건 내에서 신용을 평가하고 이윤을 보장하는 장치는 존재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확대되면서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는 호혜적 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장 거래의 확대는 어느 정도의 호혜적 관계와 공존(또는 의존)한다는 캐리어

(Carrier 1991: 132-133)의 지적은 농촌사회에서의 돈거래 방식에서도 확인되는 셈이다.

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이 논문은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의 한 주민이 약 26년간 기록한 『창평일기』(1969~1994, 이하 「일기」)를 분석한 것이다. 「일기」의 저자인 최내우는 1923년 생으로, 만 46세이던 1969년부터 1994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기 전날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적었다.⁴⁾ 그동안 여러 일기를 검토하면서 갖게 된 인식은, 일기가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사실에 바탕을 둔 주관적’ 기록이며, 물질적, 비물질적 거래를 기록한 일종의 장부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런 ‘사회적 관계의 개인적 장부’로서 「일기」는 재물의 거래, 특히 부채관계와 관련하여 주고받는 상황과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기가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 아니라, 되돌려 받거나 갚아주어야 할 신세나 빚 즉 물질적, 감정적 거래를 잊지 않기 위하여 적어놓는 기록이기 때문이다.⁵⁾

「일기」의 저자가 일생 동안 거주했던 임실군 창인리는 임실읍과 약 6km 그리고 전라북도의 중심도시인 전주와는 약 26km의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이 일대는 진안고원의 남서방면 주변부 구릉지로, 산간을 돌면서 임실 읍내를 지나 흘러온 임실천이 마을 바로 앞에서 본류인 섬진강과 합류한다. 따라서 이 합류점을 중심으로 펼쳐진 천변 평탄지에는

-
- 4) 「일기」 및 저자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창평일기 1』(2012a)를 참조할 것.
5) 금전거래 내역만을 기록하였다거나 모든 금전거래의 내역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기’는 거래장부와는 다르다. 저자 일가의 금전거래 내역 중 「일기」에 기록된 것은 저자 개인의 일상 속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및 경제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논이 발달한 반면, 우기에는 하천범람과 교통두절을 겪는 일도 잦았다. 이로 인해 현재 4차선으로 확장된 마을 앞 국도를 통해 임실, 전주와 연결되기 전인 1970년대까지, 창인리는 마을 뒤쪽으로 나 있는 산길을 통해 임실시장에 왕래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고립된 마을이었다. 이 시절에는 마을에 들어오는 대중교통도 없었으므로, 전주에 가기 위해서는 3km 이상 떨어진 임실역이나 관촌역까지 걸어 나와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창인리는 임실향약을 기초하고 현감 조진석에게 그 실시를 건의했던 인물인 만류당(萬流堂) 이득환(李得煥)이 병자호란 후 전주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와 처음 정착한 곳이라고 전한다.⁶⁾ 그러나 만류당은 곧 이웃한 대리로 강학의 터전을 옮겼고, 창인리는 전형적인 각성바지 마을로 남은 가운데, 대리에서도 유력 성씨인 삭녕최씨가 이 마을에서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⁷⁾

창인리는 크게 창평(昌平/倉坪, 쉿평), 청운동(靑雲洞, 처마니), 필동(筆洞, 붓골) 등 세 마을로 다시 나뉜다. 2010년 4월 마을회관에서 만난 80대 후반 여성 주민들은 예전에 사람이 많이 살 때 창평에는 육십여 호가, 청운동에는 여남은 집이, 필동에는 서너 집이 살았다고 했다. 청운동과 필동은 군부대 부지에 포함되어 방문 당시 이미 마을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고, 창평에는 55호 가량이 거주하고 있었다. 도시이동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 양상은 ‘원래 백여 가구에 달했던 마을이 1970년대 들어 90여 가구로 줄어들었고, 이중 30여 가구가 이미 마을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1988. 2. 7. 이하 숫자는 『일기』의 날짜임)이라고 적은 『일기』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⁸⁾ 위 80대 후반 여성주민들의 증언은

6) 이 내력은 ‘신평면 대리 문하생 일동’ 명의로 세워진 <만류선생이공덕환지묘> 비석에 기록되어 있다(전라금석문연구회(2007: 20).

7) 주민들은 “많이 살지는 않아도, 옛날에는 본토쟁이가 최씨들이야.”라면서도 “여긴 민촌, 민촌, 고런 민촌이 없었어요.”라고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8) 그리고 저자는 이듬해의 『일기』(1989. 6. 25)에 마을 주민 중 40여 가구가 서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1970년대 본격적인 인구이동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일기』의 기록자인 최내우는 어려운 가정환경, 특히 후처소생이라는 집안의 차별 속에 편모슬하에서 혹독한 가난을 겪으며 자란 일을 되새기며, 자신의 대에 마을과 지역사회의 유력자로 성장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49년부터 17년간 이장(초임 당시는 구장)을 지냈으며, 격심한 좌우대립과 빨치산 활동의 현장이던 창인리 그리고 신평면에서 우파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성공적으로 마을을 지켜냈고, 이는 그의 정치적 성공과 위세로 이어졌다.⁹⁾ 또 1946년 처가의 도움으로 방앗간을 운영하게 되면서 남다른 근면함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정치적·경제적 지위로 인해 그는 이 글에서 다루는 1970~80년대 내내 마을과 면을 대표하는 각종의 공식·비공식 직책을 맡아 사회적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즉 그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창인리라는 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핵심고리와 같은 위치—물론 경쟁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열위에 놓이는 일 역시 많았으나—를 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위치로 인해 『일기』는 창인리라는 마을 내의 경제적 거래, 그리고 이것이 국가기구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맞물리는 방식을 검토하려는 이 글의 기획에 부합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 글에서는 저자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1969년부터 1985년까지의 『일기』 원문에 나타난 금전거래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1985년은 저자의 나이가 만 62세가 되는 때로, 이때 이미 저자는 농사일과 정미소 일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로 농협 융자나 농업후계자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이 자녀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기』에 기록되는 저자 자신의 금전 거래 내용은 그 횟수나

9) 이에 관해서는 이성호(2013) 참조.

유형에 있어서 현저하게 빈약해진다.¹⁰⁾ 여기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부채는 현금 및 현물채무, 그리고 외상거래 등으로 이루어진다. 『일기』에서 돈거래와 관련된 내용에는 부채 이외에도 소득, 저축, 각종 회비 및 깃돈 납부, 상품 구매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부채 및 그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농촌사회의 채무관계를 농촌 주민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일기』를 통한 미시적 분석이 농촌 부채에 접근하는 거시경제학적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농촌사회의 돈거래 관행과 신용체계의 변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기』 원문에서 해당 내용을 골라내는 데는 ‘부채’와 관련된 어휘를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¹¹⁾ 원문에 담긴 전체 어휘 중 부채와 관련이 없는 어휘를 여러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소거하는 방식을 통해 부채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일기』의 원문을 모두 추출하였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그 속에 포함된 정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교차분석하여 농촌사회의 부채 및 채무관계 일반적 특성과 그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다시 원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부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일기』 원문은 모두 1,423일 분량이었으며, 이 내용들이 담고 있는 정보는 아래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12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¹²⁾

10) 1980년대 중반 경부터 그의 활동은 자녀가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를 만나 청탁하거나 농협 용자를 위해서 보증인을 구하는 등 자신의 사회적 인맥을 통해 자녀의 뒤를 봐주는 일이 중심이 된다.

11) 이 작업에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어휘 분석 소프트웨어 『한마루 2.0』을 이용하였다.

12) 다만 『일기』 원문마다 담고 있는 정보의 종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 간의 교차분석은 해당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1〉 「일기」에서 확인되는 채무 관련 정보의 내용

정 보	내 용
① 시간 (일시)	연. 월. 일.
② 공간 (장소, 지역)	거래 장소, 채무·채권자 거주지
③ 채권자	
④ 채무자	
⑤ 채권자-채무자간 관계	
⑥ 채무액	
⑦ 채무 기간	
⑧ 이자(율)	
⑨ 채권자별 채무의 성격	사채, 공공용 채무, 외상
⑩ 채무의 용도	생활비, 영농비, 부채상환금
⑪ 거래 내용	빌리기, 갚기, 빌려주기, 돌려받기
⑫ 거래형태	현금, 현물

3. 1970~80년대 농촌 채무의 일반적 특징

농림부(1976)에 따르면 1975년 가구당 평균 농가부채액은 3만3천 원이고 이중 사채 비율은 65.5%에 달했다. 그리고 가계비 충당을 위한 소비성 부채가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자료(농림부 1981)에 따르면, 5년 후인 1980년에는 사채의 비중이 전체 부채의 절반가량인 49%로 줄어들고, 농협 부채가 48.7%로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성 부채의 비중은 전체의 32.9%로 5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아래의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일기」에 나타나는 부채 관련 돈거래 규모는 외상 거래를 제외하면 17년 동안(1969~1985) 약 1억1백만 원가량이다.¹³⁾ 이 액수에는 부채액과 상환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중 돈을 빌린 순부채의 규모만 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채

13) 「일기」에서 부채 및 외상거래의 일부는 현물로 기록되어 있다. 〈표 2〉와 〈표 3〉에 제시된 거래 빈도는 현금, 현물거래가 포함된 것이며, 금액은 현물거래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특히 외상거래는 그 특성상 현금액이 아니라 물품으로 기록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외상거래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제시하였다.

〈표 2〉 부채 유형별 금전 거래액 규모(1969~1985) (단위: 원, 회, %)

	평균	빈도	합계액
사채	79,979.9	812	62,507,744 (61.7)
공금융 부채	308,335.2	126	38,850,237 (38.3)
총 계	108,057.5	938	101,357,9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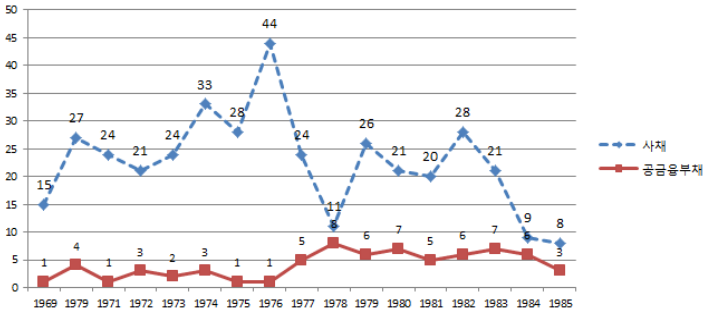
〈표 3〉 부채 유형별 순부채 규모(1969~1985) (단위: 원, 회, %)

	평균	빈도	합계
사채	65,275.9	353	23,042,408 (47.6)
공금융 부채	373,446.0	68	25,394,330 (52.4)
총 계	115,051.6	421	48,436,7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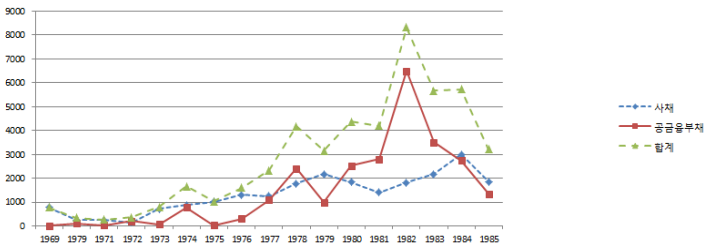
가 약 2천3백만 원, 농협 부채가 약 2천5백만 원가량으로, 각각 전체 부채의 약 48%와 52%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농협 부채가 거래 빈도는 낮지만, 1회당 평균 부채 규모는 사채에 비해 약 5.7배에 달할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 뒤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부채 규모는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농촌 부채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이다. 채무관계의 빈도(〈그림 1〉)와 부채액의 연도별 추이(〈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77년을 기점으로 농협의 공금융 부채가 증가하고, 사채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금융 공급의 증가가 사채거래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1970년대 후반 이후에도 주민 간 사채거래는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농림부의 조사(농림부 각년도)에서 1980년과 1985년 농가부채의 용도별 비중은, 생산성 부채가 약 60%, 가계 소비성 부채가 약 30% 내외, 그리고 채무 상환용 부채가 11%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일기』에 나타난 부채의 용도별 구성(〈표 4〉)은 생산성 부채가 농림부 자료보다



〈그림 1〉 부채 유형별 빈도 변화 추이



〈그림 2〉 부채 유형별, 연도별 부채 규모 추이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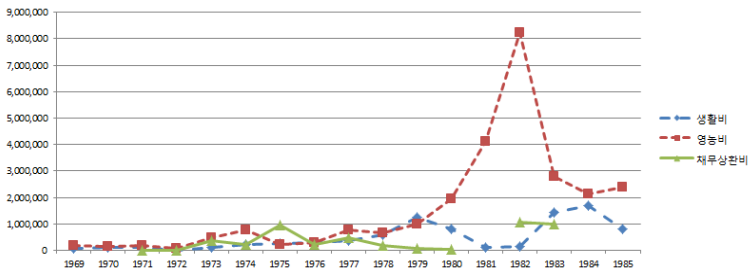
약간 높은 약 67%, 가계 소비형 부채는 약간 낮은 약 21%의 구성을 보인다. 이것이 1969~1985년까지의 17년간의 자료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생산성 부채의 구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 공급된 공금융 부채는 전체의 약 3/4이 생산성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¹⁴⁾ 전체 부채액 중 약 20%가량이 생활비로 소비되고 있는데, 이중 약 80% 가량은 사채를 통해서 조달되었다. 공금융 중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몫은 대부분 농기계와 농자재, 농약·비료, 농지 및 가축 구입 등 농업생산자금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생계자금과 농업생산에

14) 특히 농협 채무 중 생활비로 포함된 주택수리비 등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주택과 부엌, 화장실 개량 등에 사용된 지원금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농협을 통해 공급된 공금융은 대부분 생산비에 집중된 것이다.

〈표 4〉 용도별 부채 유형(단위: 회, 원, %)

용도	거래 빈도			금액		
	사채	공금융 부채	합계	사채	공금융 부채	전체
생활비	101 (39.6)	15 (17.6)	116 (34.1)	6,235,770 (35.3)	2,167,570 (10.0)	8,403,340 (21.3)
영농비	123 (48.2)	64 (75.3)	187 (55.0)	9,403,430 (53.2)	16,976,046 (78.0)	26,379,476 (66.9)
채무상환비	31 (12.2)	6 (7.1)	37 (10.9)	2,021,400 (11.5)	2,609,811 (12.0)	4,631,211 (11.8)
합계	255 (100.0)	85 (100.0)	340 (100.0)	17,660,600 (100.0)	21,753,427 (100.0)	39,414,027 (100.0)

- 주: 1) 채무유형 중 거래빈도는 현금, 현물채무 합계이며, 금액은 현금채무만 계산함.
 2) 생활비에는 교육비, 주택 임대·수리비 포함.
 3) 영농비는 농기계 및 도구 등의 구입비와 비료, 농약, 기타 소모성 농자재비, 노임 포함.



〈그림 3〉 용도별 부채의 연도별 추이

소요되는 소소한 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 농촌사회에서 소액의 사채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부채의 용도별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농업경 영비 부채 규모는 198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1982년에 정점에 달했다가, 그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생계용 부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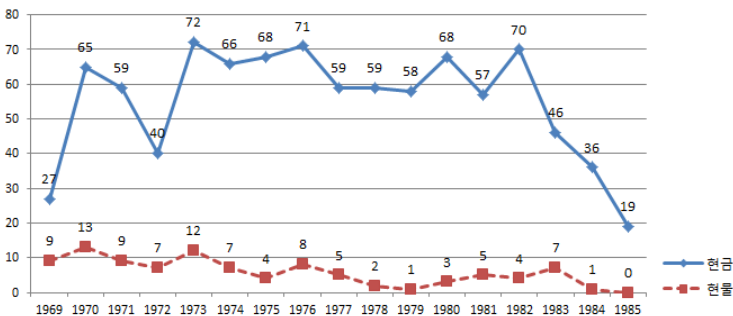
15) 사실 농촌에서 생산자금과 생활비용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식비 중 상당 부분은 농사일과 연관되어 소비된다.

1981년과 1982년을 제외하면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채무상환을 위한 부채는 줄곧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2년과 1983년에 증가하고 있다.

4. 농촌사회의 금전거래 관행

『일기』에서 채무 관계는 현금 및 현물(쌀, 보리 등)로 이루어진다. 1969년에서 1983년까지 현금이 아니라 곡물을 빌리고 갚는 행위는 모두 71차례 등장한다. 아래의 <그림 4>는 현금 채무와 현물 채무의 연도별 빈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빈번하게 쌀이나 보리를 빌리고 갚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1980년대 초반까지도 현물 채무가 유지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토지를 사고 파는 경우에 쌀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토지 매도가격과 소개비를 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다시 쌀값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거래의 사례(1980. 3. 10; 1981. 12. 18)가 1980년대에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현물거래의 관행이 유지되는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화폐가치의 변동이 심한 때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림 4> 채무 형태의 연도별 빈도 변화

전쟁 이후 물가변동이 극심하던 1950년대의 현물 거래가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준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반까지 현물거래의 관행이 남아있었던 것은 농촌사회의 돈거래에서 안정성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일기』에서 현물 채무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이 임실이라는 지역특성, 혹은 도정업자라는 개인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경기도 평택 지역에서 작성된 신권식(1929~)의 『평택 대곡일기』(1959~2005)를 통해 확인된다(지역문화연구소 편 2007: 49-54). 이 일기의 경우 역시 1983년까지만 해도 일기 말미에 장리쌀의 대차관계를 매년 소상히 기록하고 있었고, 이 무렵부터야 장리쌀의 거래규모가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1982년 봄부터 늦여름에 걸쳐 장리쌀을 얻어간 주민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부동산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 조차 지켜지지 않아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고 만 점이 눈에 띈다. 그 결과인 듯 신권식은 1982년 겨울 토지문서를 담보로 100가마의 장리쌀을 놓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어서 1986년 이 일기에 마지막으로 장리쌀 관련 기록이 나타나니, 개별 사건 특성이나 거래규모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그 추세 자체는 『일기』에서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양상이다.

이렇게 해서 『일기』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특히 농촌사회의 채무 관계에서 농협이 중심을 차지하면서, 현물 부채는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점을 말해준다. 첫째,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1985년 이후의 상황은 그 이전까지의 상황과는 판이한 것이며, 이는 1985년까지의 상황을 다루는 이 글의 시기구분을 정당화해준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 이후의 상황을 지배하게 된 것은 그 이전 시기에 성장해오고 있던 어떤 경향의 산물이며, 이는 그 경향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려는 이 글의 기획이 적절한 것임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그 경향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전거래와 외상거래 두 영역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기로 한다.

1) 사채거래 관행과 이자율의 변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에도 비교적 소액 규모의 채무관계가 마을 및 지역사회의 범위 내에서 개인 간에 꾸준히 지속되고 있었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농협의 금융기능이 농촌사회에서 확장됨에 따라 그 발생 빈도나 전체 부채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개인 간 채무 거래 빈도는 1970년대 말부터 상당히 감소하는데,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82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1970년대 후반까지는 전체 부채에서 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이것은 농촌사회의 경제생활 조건의 변화와 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공금융의 융자 방식 또는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70년대는 농촌과 도시의 사회적 거리가 좁혀지고, 농촌개발이 일반화됨에 따라 농촌사회의 소비생활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¹⁶⁾ 그러나 정부의 정책 지원금과 농협 융자금은 농업경영비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사회에서 사채 거래는 공금융이 포괄하지 못하는 소비생활의 일정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가운데, 공금융과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되었다. 한편 농협의 융자금은 그 대상을 엄격하게 그리고 매우 시장적인 방식으로 규제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1970년대 농촌사회의 금전거래 관계를 전통적 공동체성에 기반한

16) 1970년대에 이 마을에 전기, 전화가 가설되고, 『일기』의 주인공은 TV와 냉장고를 구입하였다. 또한 그는 11명의 자녀 중 10명을 전라북도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중·고등학교로 진학시켰다.

호혜적 관계로 볼 것인가, 시장 신용에 기반한 근대적 교환관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를 이항대립적인 관계로 전제하고 어느 쪽이 맞는지 따지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양자가 실제 경제현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관계 맺기의 전선이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또 변화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기』의 세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마을 내부 또는 지역사회 범위에서의 금전 거래는 처음부터 정확한 이자 계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율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1980년대까지도 월 3부의 높은 이자율이 유지되고 있었다.¹⁷⁾ 이자율은 물가변동 폭과 채권자가 지게 되는 위험률 등을 반영해서 결정되지만, 전국적으로 추세를 공유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일기』의 기록을 보면 1970년에는 월 6부의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부터 이자율이 월 3부로 낮아져서 1980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한주 씨 채무 4월 12일 차용인데 약 3개월인데 이본 합해서 11,800원을 본택에 가서 회계해주웠다(1970. 8. 7, 이하 『일기』 원문 인용에 등장하는 인명은 가명임).

10일에 정경석 채무 회계를 계산해노코 밧바서 못 보냈드니 아침에 정경석 씨가 왔다. 마침 성오가 왔다. 3인이 동석해서 333,000원을 3분리로 회계했다(1978. 4. 12).

정구복 씨 채무 정리하는데 삼분리로 결정하고 원리 233,800원인데 203,800원 회계해 주고 부족금 삼만 원는 금일 차용한 것으로 하고(1982. 1. 24)

17) 『평택 대곡일기』에서는 1985년 12월 11일에 ‘2부 5리’, 1987년 1월 5일과 9일에 ‘월리 2%’로 현금을 빌려주고 있었다(지역문화연구소 편 2007: 54).

최남연 채무 20만 원 이자 합해서 (이개월) 212,000원을 회계해 주웠다
(1983. 12. 24).

한편 이러한 마을 내부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행화된 금리를 바탕으로 움직이던 것들과 별도로, 같은 지역사회 안에는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금전거래의 양상이 있었다. 마을 내 주민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과 달리 『일기』의 주인공이 지속적으로 사채관계를 맺고 있는 몇 사람의 사채업자가 그들이다.

8월 19일자로 황만준 씨에서 차용금 15,000원에 이자 3일간 450원과 합해서 15,450원을 회계해 주웠다(1970. 8. 21).

역전 황만준에 갔다. 이본 해서 4일간 차용 만사백 원을 회계해 주웠다
(1970. 10. 26).

그 특징을 보면, 우선 최내우는 이들에게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가져다 쓰고 있으며, 이자율은 월 5부에서 6부에 이르는 고리였다(1975. 7. 29). 그리고 급할 때는 이들에게서 『일기』에 ‘달라돈’(1970. 10. 21; 1977. 4. 16)이라고 기록된 일수 돈을 빌려 쓰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하루 1%의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이들 고리의 채권자들은 이른바 ‘돈놀이’를 하는 지역의 사채업자들이며, 이들과의 돈거래는 분명한 개인적 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돈거래와는 구분된다. 즉, 모두가 엄격하게 금리를 적용해 대차관계를 맺지만, 서로 금리기준을 달리하는 두 개의 금전거래 체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이 두 개의 금전거래 체계가 모두 엄격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들이었다면, 그래서 전문적인 사채업자가 아닌 ‘공동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리 적용에 기반한 금전거래라는 점에서 예외가 없었다면, 혹시 정기적인 이자의 탕감이나 감면을 통해 농촌사회 내에 호

혜적인 공동체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물론 마을 주민들과의 돈거래에서는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채무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기도 하고,¹⁸⁾ 친소관계에 따라 이자를 감면해 주기도 하였다(1975. 12. 29; 1982. 1. 8; 1982. 12. 26; 1983. 11. 2). 그러나 이 사실을 가지고 마을주민 간 금전거래와 사채업자와의 거래를 마을 내 공동체적 금전거래 관계와 (근대적) 신용에 기초한 금융관계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기』의 저자가 주로 돈을 빌리는 이웃은 마을 내에서 비교적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마을 내의 세력관계에서 상위에 위치한 사람들, 즉 경제적, 사회적으로 높은 평판을 지닌 사람들로 한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일기』에 기록된 마을 주민들 간의 돈거래에서 나타나는 관용은 마을 내 일부 유지집단 내부 거래관계로 국한되어 있다.¹⁹⁾

반면, 마을 내의 금전거래에서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의 입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히려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해하는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현상의 반대편에서, 최내우는 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면 그의 신용상태를 보아 거절하거나, 불량한 신용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²⁰⁾ 이 점은 현물거래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쌀을 중심으로 하는 현물대차 관행을 보면, 물론 다소간 이자를 감면해주는 일이 더 자주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시 모든 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자를 적용하여 갚는 것을 원칙

18) 1970년대 초반에는 이 금액이 대체로 1천 원 단위였으나, 1980년대가 되면 1만 원 단위로 커진다.

19) 그가 주로 돈거래를 하는 마을 내의 몇몇 인물들은 당시에 이장이거나 새마을지도자, 초등학교 교장, 농협 이사이거나, 나중에 군의원에 당선되는 사람들이었다.

20) 마을 내에서의 금전거래에서 신용 평가는 상당히 엄격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1969. 2. 8; 1983. 12. 25; 1985. 5. 31). 그러나 신용이 불량하더라도 “본인이 절량(絶糧)되면”(1969. 2. 8) 등과 같은 경우에는 빌려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으로 하며, 빌려가는 이 역시 단지 빌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지
 턱지 하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되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현금은 물론
 현물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보더라도, 1970~80년대 농촌사회에 채무를
 둘러싼 ‘호혜적 공동체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자의 감면 또는 탕
 감을 둘러싸고 나타난다기보다는, 빌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기반해
 서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을공동
 체’는 이자율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외부의 전문화된 사채업자
 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보다 낮은 이자율이라는 한 겹의 방어막
 을 씌으로써 그 ‘마을’의 경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성격을 지녔었다.

한편, 『일기』의 저자가 빈번하게 고리 사채 거래를 하는 지역 내의
 사채업자들도 『일기』의 저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었다. 『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사채업자 중 두 사람은 지역 내에서
 철물점(한길수)과 공업사(황만준)를 운영하고 있어서, 방앗간을 경영하
 는 『일기』의 저자와 기계 부품의 구입과 수리 등을 통해 긴밀한 거래관
 계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더구나 전주의 성수는 『일기』 저자의 친형
 의 아들이다. 장조카인 성수는 창평 마을에 살다가 전주로 이주했는데,
 마을에 살 때부터 작은아버지인 저자와 동일한 조건의 돈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저리의 마을 내 사채는 물론 고리의 거의 전문적인 사
 채업자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현금으로 빚을 얻는 일 역시 쉬운 일은
 아니어서, 업무적으로 얽혀 있는 대단히 긴밀한 사업적 거래처 관계나
 그에 준하는 긴밀한 유대가 있을 때만이 그조차 가능했던 셈이다.

고리 사채를 사용할 때 채무자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대부분의 사채거래에서 채무자는 2~3개월가량의 짧
 은 기간만 사용하려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가능한 한 채무 기간
 을 줄이려 노력하였다. 아래에 인용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기일
 내에 채무 전액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도 이자와 원금을 일단 상환하고,

그 날짜에 다시 돈을 빌려서 이자 지급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농촌 주민들의 고리 사채에 대한 경각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리 사채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채무 기간을 단기화하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황만중에서 4만 6천원 10월 18일 자 차용한바 5만 3천원을 주고 다시 2만 원을 차용했다(1976. 11. 13).

성수에 갔다. 채무 정리하는데 3월31일자 5만원 5월 31일자 15만원 계 20만원인데 이자 2만원해서 22만원인데 10만원 청산해주고 금일자로 12만원을 신규 차용한 것으로 결정하고 왔다(1976. 8. 2).

마을 내부에서의 돈거래가 가지는 가장 큰 이점은 소액을 손쉽게 신속하게 구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농협과의 거래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문서로 신용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속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사채의 장점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서 거래 상대의 신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도 개인 간 돈거래의 중요한 장점이었다. 언제든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의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상대방의 활동 동향과 생활 형편을 훤히 알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었다. 바꿔 말하면 농촌사회의 공동체적 친밀성은 돈거래를 위한 신용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²¹⁾ 그러므로 사채 거래는 단기간에 채무 관계를 청산할 수만 있다면, 농민의 생활과 농사일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거래였다. 다소간 극언이 될 위험을 감수하고 표현한다면, 한 마을에서 공동체의 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이웃에서 빚을 얻을 수 있

21) 「일기」에는 마을에서 누가 도박을 해서 얼마를 잃었는지, 누가 고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소상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는 자격을 얻는 일에 다름 아니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보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채무의 족쇄에 묶인 답답한 감옥으로 느껴지겠지만, 당장 돈 한 푼, 쌀 한 말에 급한 이에게 그것은 낙원에서 뺏는 구원의 손길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 대한 인식은 ‘마을공동체’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한 발견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간다. 『일기』를 보면 마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빛을 분할해가며, 내가 진 빛(의 일부)을 내가 받을 빛(의 일부)으로 대체함으로써, 서로 촘촘히 얽혀 거의 꿈쩍달씩할 수 없는 ‘빛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임태섭은 며칠 전부터 백미 3입(仄)만 채무 차용케 해달라고 해서 주마고 했더니, 2입은 정한주를 주고 1입은 윤수를 주라고 했다. 그래서 한주에 2입을 주웠는데 윤수 조 1입은 정인석을 주라고 해서 주기로 하고, 인석 2두 취여온 놈을 제하고 8두만 달라 했다(1970. 1. 16).

이 기록만을 보아서는 도대체 내역이 무엇이고 어느 부분을 누가 말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암호문서처럼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사람들이 서로를 빛으로 얽힌 관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처럼 마을 주민 간의 돈거래는 채무 관계를 언제나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빌리고 빌려 준 채무들은 서로 간에 얽히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언제든 빛을 이전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채무와 상환의 순환구조를 만들어 삶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었다. 앞서의 언급을 이어본다면, 한 마을에서 공동체의 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빛을 주고, 그럼으로써 다음에 내가 얻은 빛을 쪼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이 과정을 통해 빛이라는 사슬로 뽁뽁 묶인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²⁾

22) 이 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한 심사자는 이 ‘빛의 공동체’가 삶을 용이하게 하는 면과 함께 ‘옛보중’으로 얽어뻌으로써 채무자가 빛을 떼어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농촌에 대한 현물지원 — 시멘트, 슬레이트, 벽돌 등 — 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언제나 농촌 주민들의 소소한 자기부담을 요구했다. 주택개량 등을 위해 지원되는 시멘트나 슬레이트는 언제나 조금씩 양이 부족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서로 벽돌, 시멘트, 슬레이트 등을 빌려 쓰고 나중에 다시 갚기도 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들, 즉 노임이나 음식값, 술값 등은 이웃에서 융통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농촌개발 사업은 농촌의 현금 순환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고, 이는 주민 간 금전거래를 오히려 증가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민들 간의 돈거래는, 특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급할 때 할 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레이버(2011: 580)의 지적처럼 정기적으로 개인 간 부채를 청산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다. 창평 마을에서는 주로 연말, 명절 전, 그리고 추곡과 하곡 수매대금을 받았을 때, 부채를 청산하였다. 이렇게 ‘빛(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격)의 공동체’로서의 마을은 그 빛을 주기적으로 청산하거나 이월·분할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그리고 국가기구에 의해 주어지는 ‘근대화운동’의 지원물자조차 전통적인 방식으로 쪼개고 나눔으로써, 해마다 스스로의 존재를 경신해가면서 살아 움직여왔던 것이다.

2) 농촌사회의 외상거래 관행

『일기』에서는 분석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약상, 공업사, 주유소 등 농업용 재료와 자재

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해주었다. 이는 대단히 탁월한 파악으로, 이 논문의 공동저자들 역시 이 글 안에서 제대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금전거래 외의 현물거래까지 분석하는 작업이 이 ‘빛의 공동체’가 지니는 다면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지적을 포함하여 이 글은 여러 심사자·논평자로부터의 많은 조언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그것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이 글의 한계이지만, 그에 대해 큰 ‘빛’을 지고 있다는 점만은 이 자리를 빌려 밝혀두고자 한다.

〈표 5〉 거래처별 외상거래 유형

	거래 품목			합계
	생활용 소비재	농업용 소모품	농업용 내구재	
개인	129 (38.2)	141 (41.7)	68 (20.1)	338 (100.0)
농협	1 (2.1)	38 (80.9)	8 (17.0)	47 (100.0)
합계	130 (33.8)	179 (46.5)	76 (19.7)	385 (100.0)

거래는 물론이고 동네가게, 술집 등 생활용품의 구입 심지어 병원, 약국 등도 외상으로 거래하였다.²³⁾ 때로는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입액의 일부를 외상으로 남기기도 하였다(1973. 9. 12). 현금의 부족 뿐 아니라 긴급한 현금의 필요성에 대비해서 물품 구입대금의 일부를 외상으로 남겨놓는 일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일기』 원문에서 외상거래는 모두 385회가 등장하는데, 전체 거래 중 개인 간 거래가 338회이고 농협과의 거래가 47회로 나타나고 있어 각각 87.8%와 1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5〉 참조). 특징적인 것은 개인 간 거래의 약 40% 가량이 생활용 소비재 거래이고 약 60% 가량이 농업용 생산재(소모품 + 내구재) 거래인데 비해, 농협과의 거래에서는 약 98%가 농업용 생산재 거래라는 점이다. 아래의 〈표 6〉은 다시 그 세부의 거래처별 거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개인 간 외상거래는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 임실군 내의 다른 지역(1974. 5. 29) 또는 전주(1978. 2. 2)까지도 확대되어 이루어졌다. 이것은 외상거래가 개인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외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신용관계는 소위 ‘단골’ 거래를 통

23) “오늘은 결정적으로 퇴원을 각오했다. 원장이 즉집 치료하려 왔다. 몇일 연기를 요하기에 불응했다. 메누리에 부탁코 계산한바 56,000이라고 외상으로 하고 퇴원했다.” (1984. 9. 4)

〈표 6〉 거래처별, 거래품 종류별 거래액

거래처	품목	평균 가격	빈도	합계액
개인	생활용 소비재	13416.2435	115	1542868.00
	농업용 소모품	46080.4020	102	4700201.00
	농업용 내구재	27406.4615	65	1781420.00
	소계	28455.6348	282	8024489.00
농협	생활용 소비재	11210.0000	1	11210.00
	농업용 소모품	120170.8261	23	2763929.00
	농업용 내구재	61583.3333	6	369500.00
	소계	104821.3000	30	3144639.00
합계	생활용 소비재	13397.2241	116	1554078.00
	농업용 소모품	59713.0400	125	7464130.00
	농업용 내구재	30294.6479	71	2150920.00
	총계	35798.4872	312	11169128.00

해서 확보될 수 있었다. 때로는 거래 당사자 양측에 영향력을 지니는 제3자의 소개로 외상거래를 시작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단골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²⁴⁾

1980년대 중반까지도 개인 간 외상거래가 관행적으로 성행했던 이유는 부채와 달리 외상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었다. 물론 정기적으로 개인 간 부채를 청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상거래 대금의 청산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일기』에서는 가게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할 때, 이전의 외상을 청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²⁵⁾ 이전의 외상값을 청산하지 않고 다시 외상으로 물품을 가져가려 하는 것은 불량한 행위로 간주되었다(1974. 3. 28). 이러한 관행은 외상거래 당사자 사이의 신용관계가 유지되고, 거래가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4) 『일기』의 저자는 1975년 둘째 아들의 결혼예물을 준비하면서, 큰며느리의 친정과 연고가 있는 전주의 보석상(보광당)을 소개받아 외상 거래를 시작한 이후, 자녀들의 결혼예물뿐 아니라, 학생용 시계 구입 등도 이 가게에서 외상으로 거래하게 되었다(1975. 5. 27).

25) “임실에서 경유 3드람 운반해왔다. 전조 외상대 75,300원 회계 완료해주고 3드람만 또 외상으로 했다.”(1978. 12. 7)

여기에서의 호혜적 관계 역시 금전거래의 본성인 시장교환과 별도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범주가 아니다. 마치 전문적인 사채업자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유지함으로써 채무의 공동체를 구축해갔던 것처럼, 단지 외상대금의 청산을 다음 거래의 시점까지 얼마간 유예함으로써 긴박의 강도를 낮추어주고, 그럼으로써 그 가장 긴박된 시장교환의 거래관계 안쪽에 한 겹의 막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물론 그 ‘늦춤’이 가능하려면 ‘신용’이 필요했다는 점, 바꿔 말하면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호혜성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금전거래에서의 채무관계와 마찬가지로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구축된 신용을 전제로 하는 외상거래는 농촌주민의 생계뿐 아니라 농사일의 진행도 원만하게 해주는 농촌사회의 중요한 관행이었다. 예를 들어 관혼상제에 필요한 물품은 대부분 외상으로 거래하고, 의례가 끝난 후에 외상값을 갚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이러한 관행은 의례의 원만한 진행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1975.1.13; 1975.1.14; 1975.2.2).

5. 공금융 공급 증가와 농촌 신용체계의 변용 및 변화

1) 「농협」의 농촌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말부터 농협을 통해 농촌사회에 공금융 공급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농업 지도와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농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농협으로 흡수되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 주민들은 각종 조세 및 준조세를 농협에 납부하게 되었다.²⁶⁾ 특히 도시와의 교류가 확대되고, 자녀들이 도시의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26) 1970년대 초반까지 「일기」의 저자는 남원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동네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체부에게 맡겨서 처리했다.

자녀 교육비의 납부 등도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민들은 농협과의 거래를 통해 이자율이 낮고 상환기간이 긴,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액수의 농업생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농협은 농산물의 품종 선정과 적정 생산기술의 보급에 개입하고, 거기에 맞는 자재와 재료 등을 대량으로 공급하였다. 정부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재료, 자재 및 기계 등의 공급을 농협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⁷⁾ 농업생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증가하고, 이 업무도 농협이 독점하였다. 농민들은 농협을 통해서 비료, 농약 등의 소모성 농자재를 구입하고, 경운기, 동력분무기, 이앙기 등 농기계 구입 자금지원도 농협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선정 등의 지원금도 농협을 통해서 지급받았다. 농촌사회에 대한 농협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농사일은 이제 농협의 지원 없이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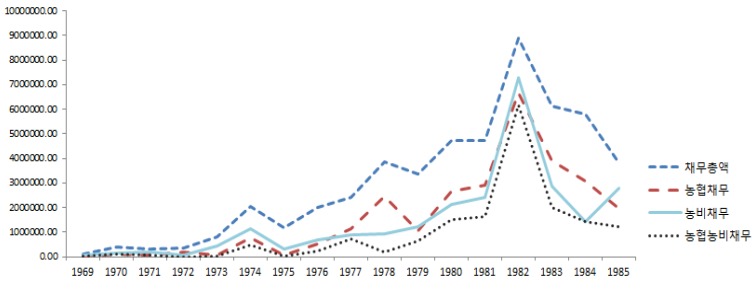
『일기』의 저자인 최내우의 농협 부채는 1978년경부터 1983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²⁸⁾ 아래의 〈그림 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기간 동안 그가 농업생산을 위해 빌린 영농자금(소모성 농자재 + 내구성 농기계 + 농업지원금)은 대부분 농협에서 조달되었다. 특히 1979년 이후 저자의 영농비 부채 규모는 농협의 영농비 부채액과 거의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기』에서 1969년부터 1985년까지 저자는 농협과 250차례의 금융거래를 하는데, 그중 55% 이상이 대출과 관련된 것이다.²⁹⁾ 이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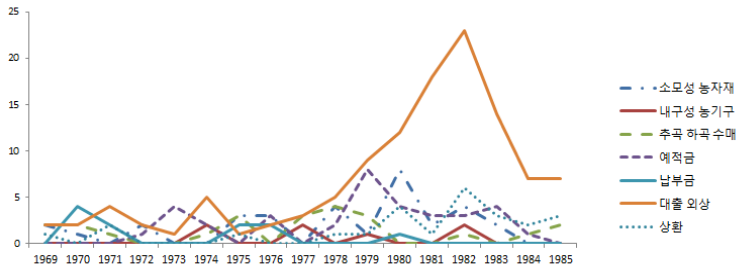
27) 1961년 정부의 비료 자유유통 금지 조치에 따라 1962년부터 1982년까지 비료공급을 농협이 독점하였다. 1982년 이후에도 민간 농약상에 공급되는 유통물량을 장악하여 실질적인 독점은 지속되었다. 농약도 1962년부터 농협이 독점하다가, 1966년 시판상의 판매를 허용했으나, 수도용 농약과 국고보조 농약은 농협이 담당하고, 기타 농약만을 시판상이 판매하도록 규정하였다. 농기계의 경우에도 1962년 이후 1981년까지 농협에 의한 공급이 유지되었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11: 346-362).

28) 1983년은 『일기』의 저자가 환갑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후 그는 농사일과 정미소 일을 아들에게 대부분 넘겨주었다.

29) 최내우의 농협 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대출 및 대출금 상환(157건, 55.3%), 농자재 구입(50건, 17.6%), 예·적금(39건, 13.7%), 추곡·하곡수매대금 수령(27건, 9.5%), 납부금 입금(11건, 3.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연도별 채무액 및 채무 내용 구성 변화



〈그림 6〉 농협 거래 내용의 연도별 추이 (빈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1970년대 말부터 농협과의 거래 내용 중 대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또한 소모성 농자재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추곡, 하곡의 수매대금을 찾거나, 예금·적금 등 소득과 관련된 업무가 농협과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징적인 것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출금의 상황과 관련된 거래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장기, 저리로 빌려 쓴 농협 대출금이 1980년대 이후 농촌주민들에게 상당한 상황 압박을 가하게 되었으며, 농민들의 소득과 저축은 이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농협」 대출과 신용체계의 변용

농협은 농민의 영농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점차 농촌의 경제생활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농촌 주민 모두에게 균질적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했다. 우선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출자하여 회원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 회원이 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반드시 자신의 상환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가장 일반적인 신용 증명방법은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자산 능력을 갖춘 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 외에 소액의 경우에는 적금을 먼저 들고, 그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³⁰⁾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을 담보하거나, 담보 능력이 있는 인물의 보증이 필요했다. 「일기」의 저자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마을 주민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았고, 때로는 자신이 마을 주민의 대출 보증인이 되어주기도 했다. 농협 대출을 위한 마을 주민들 간의 보증은 서로 주고받는 ‘품앗이’의 양상을 띠기도 했는데, 이때 이른바 호혜적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가 기반이 되었다. 주민들은 농협과의 거래에서 서로 보증을 주고받는 일을 이전의 마을주민 사이의 돈거래 관행과 다르게 인식하지 않았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거나(1979. 6. 7; 1982. 9. 22) 농업용 물품을 외상으로 가져올 때(1970. 4. 15; 1972. 6. 3; 1980. 3. 27),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서로 보증을 서주었다. 심지어 「일기」의 저자는 “농협에서 통지가 와서 떼보니 타인의 보

30) 「일기」 원문에서 농협대출 중 대출 조건이 나타나 있는 사례는 45회이다. 이 중 담보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16회, 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8회이다.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사례가 15회로 나타난다. 물론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때도 보증 절차는 필요했다(1969. 7. 18; 1981. 3. 12). 한편 출자는 6회 나타나는데, 일단 한 번 출자를 하면 회원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도 여러 차례 출자를 하는 것은 대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자금의 증액을 요구받게 되기 때문이다.

증”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채무자조차도 기억”(1980. 2. 9)을 못하기도 하고, 이양상자 외상 계약을 위해서 마을주민들의 도장을 모아서 농협직원에게 한꺼번에 맡기고 잊어버리기도 하였다(1980. 3. 27; 1980. 3. 31).

그런데 『일기』의 저자가 상호보증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는 마을 주민들은 이전에 돈거래를 빈번하게 주고받았던 마을의 유력자 집단으로 한정되어 있다. 과거 주민들 사이의 돈거래에서 사회적 평판의 기준이 되었던 경제적 자산과 사회관계가 농협과의 거래에서 문서화된 근대적 신용 증명의 조건으로 바뀐 것이다. 즉 농협 대출의 필수조건인 주민들 간의 (맞)보증, 담보 제공은 농촌사회의 전통적 사회관계가 근대적 신용 체계 속으로 흡수·변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용자받게 되는 것은 영농자금 확보에서 매우 중요한 혜택이다. 그러나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정보를 얻고, 자신 또는 가족이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의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³¹⁾ 이때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 서로 추천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역시 마을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도움을 주고받던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협 조합장 등이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한 공금융의 배분이 농촌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농협의 문턱 앞에서 농촌의 주민들은 평등하지 않았다. 농협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자산능력이 있는 보증인을 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였다. 결국 정부의 농업 지원정책과 농협의 독점적 자금, 자원, 자재 지원은 농촌 주민 중 일부 유력자층을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업과 주민의 생활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해 갔다고 할 수

31) 실제로 『일기』의 저자는 군청에 근무하는 큰 아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담당자를 만나는 데 중요한 도움을 받은 하였다.

있다.

농협이 농촌주민들과의 거래관계에서 공동체 관계를 활용하는 특정한 방식 중의 하나는 공동체 연대책임을 제도화한 데에서도 발견된다. 농협은 농약, 비료, 이앙상자, 농업용 비닐 등 각종 농사 재료를 독점 공급하였는데, 이 거래를 개인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진행하였다. 즉 이장을 통해 마을의 수요량을 조사하여 신청하게 하고, 마을 단위로 해서 외상으로 공급했던 것이다. 대금의 상환도 추곡 수매대금 지급 이후나 연말에 마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이전의 사채거래나 외상거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공동체 신용’, 또는 ‘연대신용’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이로 인해 마을 내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결국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³²⁾ 이처럼 농촌사회에 공금융이 공급되면서 제도화된 공적 신용체계는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 등을 적극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단위를 기초로 공동체적 연대성을 새롭게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장을 방문하고 외상 자재 및 농약 물품대를 계산한바 농협직원도 참석. 원금이 삼십여만 원이고 그의 이자 이십일만여 원 계 오십일만이라고 했다 (1983. 12. 11).

밤에 리(里) 회의장에 참석한바 이장 회계 조가 (농협 조) 약 950만 원인데 리민의 부담 조가 약 5백만 이상의 순부담금이 3백만 원이라고 했다. 차후 처리가 난관이다(1983. 12. 29).

3) 외상거래 관행의 변화

외상거래는 생계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이루어지면서 농촌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행이라는 점

32) 왜냐하면, 이 공동체 신용은 마을 단위의 성과 평가와 맞물려 있어서 다음 해의 농자재 공급이나 마을 지원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외상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가 지속될 수 있는 기제로서, 단골 관계와 주기적인 외상대금의 청산 관행을 지니고 있었다. 농협과 주민 사이의 거래에서도 농업용 자재에 국한되어 있기는 했지만 외상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 품목의 대부분이 농업용 자재였기 때문에 거래는 매년 연초와 봄철에 집중되었고,³³⁾ 외상대금의 상환은 대부분 추곡수매 대금 지급 때나 연말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이 거래관계는 농촌사회에서 점차 관행이 되었다. 이중 대부분의 품목은 농협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협과의 외상거래는 어느 정도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는 농사일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하는 일이었다.

개인 간 외상거래는 판매자에게는 단골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구매자에게는 부채와 달리 이자가 붙지 않는 거래라는 측면에서 이 점이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신용관계를 바탕으로 일정한 관행을 유지하면서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농협과의 외상거래에서 주민들은 신용체계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미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약, 비료, 이앙상자 등 벼농사에 필수적인 품목들은 마을의 집단적, 공동체적 신용체계 확립을 전제로 거래되었다. 마을사회는 공동의 연대 책임을 결의한 뒤에 농협과 외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 그것이 때로 주민 사이의 분쟁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용체계를 개인이 임의로 해체할 수는 없었다.

거래품목 중 벼농사를 위한 것이 아니거나 개인적인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인 경우, 개인과 농협 사이에 외상거래관계가 맺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인과 농협의 거래는 전통적인 외상거래와는 달랐다. 즉 이 거

33) 벼농사 중심 지역에서 비료, 농약, 이앙상자 등의 수요는 봄과 초여름에 집중되었고, 그 수요 계획은 연초에 대부분 세워졌다. 농기계 등은 계절과 관계없이 구입하였지만, 거래 횟수는 매우 적었다.

래는 개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가격만큼의 금액을 농협에서 대출 받아, 물건 값으로 지불하고(사실은 대출받아 지불한 것으로 문서로 정리하고)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농협 부채였다.³⁴⁾ 이러한 거래방식은 전통적인 개인 간 외상거래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신용체계의 차이로, 농협과의 외상거래에서 개인은 대출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따라서 외상대금의 청산도 관행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³⁵⁾ 다른 하나는 이 거래가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전통적 외상거래와 달리 상환기간에 따라 철저하게 이자가 계산되었다.³⁶⁾ 외상대금을 갚는 것은 곧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농협과 개인 사이의 외상거래에서도 단골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농협의 독점 판매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적 관계였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외상거래는 기존의 관행을 해체하고 대신 이것을 채무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농촌사회에서 엄연히 구분되던 사채거래와 외상거래 사이의 차이가 농협과의 관계에서는 사라졌다. 주민들은 고리 사채의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자 지급기간을 단기화하려고 노력했다. 반면 외상거래는 주기적으로 외상값을 갚는 관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농협과의 외상거래는 채무 기간을 단기화하려는 노력도 불필요한 장기 채무였고 금액도 컸다. 따라서 외상거래는 거래금액만큼 농협 부채에 더해져서,

34) 농협과의 외상 거래가 실질적으로 채무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은 일기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예를 들어 임실농협에서 경운기를 외상으로 불허받는 것을 “경운기 대부수속한데 원금 전액 용자한데 479,060원에 7년 상환”(1974. 4. 28)으로 계약했다든지, “신평농협에서 외상 비료 4만9천원 외상 대부”(1978. 4. 4)를 받았단든지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기록은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까지 줄곧 나타나고 있다(1979. 3. 24; 1980. 6. 14; 1982. 6. 19).

35) 중식을 맞치고 자전거로 관촌농협에 갔다. 자동분무기 1대를 외상 대부 차 갔다.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정인봉 정규오 보증 날인하고 현품 인수했다(1969. 7. 19).

36) 농협에 들어 213,600원을 육묘상자 이자 기계 이자를 불입해 주웠다(1982.6.19).

농민의 상환부담을 가중시켰다.

4) 변화된 신용체계와 농민의 상환대책

농협을 통한 공금융 지원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고, 저리의 장기 채무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일기』의 저자는 마을 내 유력자층의 일원으로 농협 용자의 독점적 수혜층에 속했다. 그러나 장기 용자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농민의 가계는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1980년 대 이후 농협 채무는 저자의 가계를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농협에서 참사 외 2명이 왔다. 채무를 정리하자고 하는데 아무런 택이 없어 답답했다(1979. 12. 8).

사채는 백미 10입 현금 30만 뿐인데 농협채무가 원액 350만 원인데 상환할 능력이 현재로는 전연이 불가능하다(1983. 1. 19).

농협채 70만원 건이 정리가 못 되어 최고장이 날아왔다. 불안 속에 계회의 일모가 내렸다(1984. 1. 31).

고리이지만 사채는 농촌 주민들에게 농사일을 계속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얻어 써야 하는 빛이었다. 높은 이자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상환해 가면서 농촌 가계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채를 얻어 쓰는 것이 농민의 중요한 생활 방편이었다.³⁷⁾ 반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고 긴 상환기간을 지닌 공금융 부채는 그 규모도 컸고, 정책적 지원 명목으로 제공되면서

37) 물론 이것은 해방 전후 그리고 전쟁 직후의 농촌 경제상황이 아니라, 이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1970년대 이후의 농촌 현실, 그리고 『일기』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언급이다.

혜택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사채에 비해서 훨씬 덩치가 큰 부채의 상환 부담은 농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일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이후 「일기」의 저자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농협 부채에 당황하고, 공식문서로 발송된 독촉장을 처음으로 받고 불안해하였다. 그리고 농협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³⁸⁾

그런데 사채와 달리 농협 부채는 서로 채무-채권관계가 맞물린 마을 사람들끼리 부채를 이전할 수도 없었고, 상환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쉽지 않았다. 특히 농촌 주민들이 사채거래에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빚을 일단 모두 갚고, 그 날짜에 다시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리는 방법이 농협 부채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농협 부채는 문서화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액수를 상환해야 했다. 이것이 농협 부채와 전통적 사채거래 사이의 명확한 차이이며, 전통적 신용체제와 근대 금융의 신용체제 사이의 차이였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사채거래나 농협과의 거래나 모두 신용을 보증해주는 이는 마을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평판에 의한 전통적 신용과 공식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 근대적 신용 사이의 형식적 차이는 곧 신용체제의 질적 차이를 의미했다.

거시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농촌의 부채는 이자율과 농업생산에서 얻어지는 이윤 사이의 격차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의 농촌사회와 농민의 생활이 안고 있는 복잡하고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어쨌든 1970~80년대의 농민들은 자신의 농업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실패했다. 「일기」의 저자는 이 시기에 통일벼(1975. 11. 18), 노풍(1979. 1. 1) 등의 신품종을

38) 농촌사회에서 부채 상환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자를 붙임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일은 농협과 농민, 농협과 마을 사이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부채 상환대책은 그 자체로 일상적 부채 상환 방식으로 부채의 정상적 청산이 불가능해진 상황, 즉 ‘부채 문제’가 이미 발생한 한계적 상황에서의 농민의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었다가 큰 피해를 보고, 고추 가격의 폭락으로 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리기도 했다(1981. 1. 15). 또 소값 폭락으로 손해를 보고(1984.3. 21), 소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시위를 목도하기도 했다(1985. 8. 6).

농업소득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해진 한계 상황에서, 부채 상환을 위해 농민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다. 『일기』(1981. 1. 15)에서 저자는 “농사를 잘 진다 해도 추수기에 합산해 보면 이자 조가 못나오니” 농업소득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농사일을 접고 싶지만 그럴 경우 “토지는 자연이 사지(死地)가 되고 신용도 불신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마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외인에게는 채무가 있다 없다 유무는 말하지 않는다. 가족들에게도 상세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1981. 1. 15) 그는 1979년부터 농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청산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사겠다고 나서는 “작자도 업고 타산도 차이가 너무” 커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부채 부담을 견디기가 어려워, “작자만 생기면 고하(高下)간에 매도하고 일부라도 정리해야 껌다는 마음”(1981. 1. 15)을 다잡았다. 결국 이듬해인 1980년 최내우는 당숙에게 자신의 밭을 쌀 24가마에 매각하여 농협 부채의 일부를 갚았다(1980. 3. 10).³⁹⁾ 그리고 이듬해에 다시 마을 사람에게 토지를 매각하였다.⁴⁰⁾ 그러나 땅을 팔아도 부채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대단이 괴롭다. 부동산을 매도했어도 채무가 미청산이고 보니 진심으로 마

39) 이날의 『일기』에는 밭 매도 가격을 쌀 24가마로 하고, 가마당 42,0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소개비로 5말을 주기로 했으니, 실제 밭을 팔아 얻은 수입은 987,000원인 셈이다.

40) 정한주 정복두를 대면했더니 70입(畝) 중 1입 5두(斗)쯤 감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정한주 집에서 매도계약서를 작성했다(1981. 12. 18).

음 괴롭다(1982. 1. 12).

채무 정리차 토지를 매도했지만 잔채(殘債)가 만히 있으니 어둡고 생각이다. 신문을 보다가도 채무 생각이 나면 신문이나 내용이 머리에 들지 안코 잠만 깨도 이질 수 업다(1982. 1. 28).

한편 그는 여러 차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농협 부채를 정리하였다(1979. 3. 12; 1983. 5. 10; 1983. 12. 12; 1984. 4. 30). 그러나 빚을 얻어 빚을 갚는 ‘돌려막기’는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 방식은 부채 부담을 점점 가중시켜 결국 채무자를 부채의 함정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예를 들어 1983년에 임실군 농협에 기계대금(원동기) 이자 2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1983. 5. 10) 최내우는 1984년 군 농협에 같은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았다(1984. 4. 30).

그런데 농협 부채 해결을 위한 돌려막기는 농협의 목인 또는 방조가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예컨대 1984년 최내우는 “(면)농협에서 60만원을 대부받고 70만 조 채무 이자만 떼고 (또) 30만 조 이자만 떼고 잔금 52만” 원을 수령해서 다시 “군농협 원동기 이자 311,500원을 불입”(1984. 4. 30)하였다. 이는 농협이 부채의 상환을 위해 대출을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농협은 부채 상환을 위해 채무자인 농민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전용하는 일조차도 방조하였다. 최내우는 농협에서 “특용작물자금 70만 원 영농자금 60만 원 일반자금 30만 원을 용자 받고 구채(舊債)를 전부 떼고 30만 원을 가져왔다.”(1983. 5. 10) 이처럼 정책자금 용자금을 부채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분명 지원금의 전용행위였다.

농지를 매각하고, 대출을 받아 빚을 갚는 것은 부채 부담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구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구노력으로 부채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더 큰 부채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저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는데, 그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마을과 가족공동체였다. 그는 쌀계를 조직하여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고(1979. 1. 26), 이웃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계원을 모집하려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부채에 대해 타인들에게 고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었고, “창피하지만”(1980. 1. 26) 주민들에게 쌀계 가입을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서로 돈거래를 해왔고, 농협 대출 보증을 서로 주고받던 이웃들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음에도 모두 거절하였다(1979. 12. 21; 1980. 1. 26; 1980. 1. 27). 심지어 처음에 승낙했던 조카가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거절하고(1980. 1. 27), 출가한 장녀에게도 거절당했다(1980. 1. 29). 결국 쌀계를 조직하려는 그의 계획은 “계원 모집이 부족하여 폐계”(1980. 4. 7)되었다.

마을사람들을 대상으로 쌀계를 조직하려던 계획은 『일기』의 저자가 자신이 처한 부채 문제를 전통적 공동체관계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마을 내에서 평판에 의한 신용은 더 이상 유용한 신용체계가 되지 못했다.⁴¹⁾ 농협과의 거래에서 서로 맞보증을 교환하면서 유지되고 있다고 믿었던 신용관계는 근대적 금융체계 속으로 흡수되어 문서화된 신용증명 속에서만 존재했다. 이러한 점에서 쌀계 조직은 근대적 금융체계에 대한 농촌주민의 퇴행적 대응이었으며, 존재한다고 믿었던 울타리가 이미 망가지고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에 마지막으로 『일기』의 저자가 도움을 청한 상대는 가족, 장성한 자식들이었다. 이미 독립해 각자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도울 의무가 있음을 애써 강조했다.⁴²⁾ 그러면서 그는 “농협 채무가 원액 350

41) 마을 내에서 최내우 개인의 신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평판에 의한 신용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만 원인데 상환할 능력이 현재로는 전연이 불가능하다. 성동에서 우(牛) 1두를 차대하고 성옥이 100만 원만 주고 금추에 적금 100만 원 찾으면 90%는 자신감이 든데 현재로는 막연하다.”(1983. 1. 19)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천안에 취업해 있는 셋째 딸(성옥)의 적금 100만 원을 받아 “농협 채무 815,189원 청산”(1983. 3. 7)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84년 새해 첫날 『일기』에 그는 “채무가 다액이기에 성동이하하고 타합했듯이 49만 원을 제의 계곡(契穀)에서 주었는데 83년분 외상 비료대 347,873원, 이양상자 연부금, 기계 연부금”(1984. 1. 1) 등을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기록하면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점이 많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인 1985년에도 큰아들이 100만원을 “농협 채무를 일부 정리하라”(1985. 1. 23)고 보내왔다.

6. 맺음말

이 논문은 『창평일기』를 자료로 1970~80년대 농촌주민의 금전거래를 검토하면서, 농촌사회의 신용체계의 특성과 그 변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농촌주민들의 금전거래 관행에서 전통적인 신용과 근대적 계약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분석적 도구가 농촌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었다. ‘마을주민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전통적, 전근대적 사회관계를 기초로 성립되어, 비합리적 고리대 사채를 특징으로 한다’는 전제는 오해이며, 이는 농촌사회에서 근대적 개발이 본격화되고 농촌인구가 해체되는 시

42) “내가 채무가 다액이 되는 것은 네의 자식들로 의하야 채무가 짓고… 잘 사라보겠다고 날뛰고 잇는 것은 내가 사후에까지 재물을 가져가려 한 것은 안니니 잔재(殘財)는 모두 너의 것이 아니야 했다.”(1982. 12. 19)

기에도 주민들 사이에 사채거래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대로 농협을 통해 공급된 공금융은 근대적 신용체계를 바탕으로 전근대적인 사채거래 관행을 불식시킬 것이라는 이론적, 정책적 기대도 실현되지 못했다. 고리의 사채와 저리의 공금융이라는 단순한 인식은 오늘날 농촌부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농협 용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설을 설명하지 못한다. 농촌사회의 전통적 신용체계와 근대금융의 근대적 신용체계를 분명하게 구분하려는 단선적 접근은 농촌사회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회관계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농촌사회에서 사채거래는 공동체관계의 근접성과 친밀성이 제공해주는 경제적, 사회적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농협은 사실 이러한 공동체사회의 신용체계를 기반으로 농촌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근대 금융이 요구하는 공식적 신용증명은 공동체관계를 제도화하는 형식이었다. 마을주민들 사이의 돈거래와 마찬가지로 농협의 대출도 주민들에게는 혜택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주민들은 농협 대출에서 요구하는 보증과 담보를 주민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의 연장이라고 인식하였다. 심지어 농협은 마을의 행정단위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공동체신용’ 또는 ‘연대신용’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적 거래와 근대적 시장거래는 서로의 특징들을 수용하면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버무려 독특한 신용체계를 만들어냈다. 특히 이 글이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1970~80년대는 이러한 신용체계의 복합성 또는 혼종성을 잘 보여주는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문제에 대한 농촌주민의 대응을 다룬 논문의 마지막 장은,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혼재된, 그러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신용체계를 대하는 농촌주민들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농협 대출을 전통적 금전거래와 구분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서로 보증을 서고 담보를 주고받았던 농촌주민들이 부채를 상환할 때가 되어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비인격적이고 단호한 계약서에 당황하고 혼

란스러워하는 모습은 근대적 신용체계 속에 내재된 양면성을 드러내준다.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최종적으로는 전통적 공동체관계에 의존하는 것뿐이라는 사실도 이 문제가 비극적 결말로 종결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금전거래를 소재로 농촌사회의 신용체계가 전통-근대의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성과 다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단지 돈거래뿐 아니라 농민의 생활세계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를 토대로 농촌사회에 대한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30일, 논문심사일: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3일

참고문헌

곽병섭

1981 “농촌사채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4(3): 72-80.

그레이버, 데이비드

2011 『부채: 그 첫 5,000년』, 정명진 역, 서울: 부글.

김영철

1979 “농촌의 사채이자율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농촌경제』 2(1): 38-46.

농림부

각년도 『농가경제통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11 『한국 농협 50년사: 1961-2011 (I)』, 서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조사부

1965 『한국농정20년사』, 서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박준서

1976 “농가부채의 특질,” 『한국경제』 4: 3-22.

백진영

2014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경험을 통해 본 신용과 부채 인식의 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유병서

1998 “농가부채의 구조변화분석,” 『농업정책연구』 25(1): 19-31.

이건열

1990 “농가부채의 농업금융론적 접근,” 『농업정책연구』 17(1): 219-237.

이만갑

1973 『한국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명휘

2010 “농어촌 고리채정리사업 연구,” 『경제사학』 48: 83-124.

이성호

2013 “반공국가 형성과 지역사회의 변화: 『월파유고』의 한국전쟁기 기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1(1): 1-24.

이정덕·김규남·문만용·안승택·양선아·이성호·김희숙

2012a 『창평일기 1』, 서울: 지식과교양.

2012b 『창평일기 2』, 서울: 지식과교양.

이정덕·소순열·이성호·문만용·안승택·김규남·김희숙·김민영

2013 『창평일기 3』, 서울: 지식과교양.

전라금석문연구회

2007 『임실지역의 금석문을 찾아서』(제3회 탁본전시회 도록).

전재호

2010 “5·16 군사정부의 사회개혁정책: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과 재건국민운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2): 37-61.

주봉규

1958 “농가부채의 개황,” 『농업경제연구』 1: 72-77.

지역문화연구소 편

2007 『평택 일기로 본 농촌생활사(I): 평택 대곡일기(1959~1973)』, 수원: 경기문화재단.

최세균

1990 “농가부채 요인분석,” 『농촌경제』 13(3): 93-99.

쿨, D. C. · 박영철

1984 『한국의 금융발전: 1945-80』,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플라니, 칼

2009[1944]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홍기빈 역, 서울: 길.

한국은행

1961 『한국은행 조사월보』 15(9).

한도현

1999 “1960년대 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 서울: 백산서당, pp. 99-146.

허은

2006 “특집: 혁명과 쿠데타; 1950년대 전쟁, 빈곤, 독재를 넘어 희망을 키우다,” 『기억과 전망』 14: 8-26.

황흥도

2002 “농가경제의 위기와 정책과제,” 『농업생명과학연구』 36(3): 1-18.

Carrier, James

1991 “Gifts, Commodities, and Social Relations: A Maussian View of Exchange,” *Sociological Forum* 6(1): 119-136.

〈Key concepts〉: rural community, money transaction, credit transaction,
private loan, public loan, credit system

Changes in the Money Transactions and the Credit System of Rural Community during the 1970s and 1980s

Lee, Sung Ho* · Ahn, Seung Taik**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credit system in the rural community by reviewing 1970-80s financial transactions in the records of Changpyung Diary.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at dichotomous distinction between traditional credit and modern contract is not helpful in understanding money transaction practices of rural communities. The simple categorization that traditional money transactions are pre-modern and irrational and public finance is operating on the basis of modern, formal credit system does not grasp the complicated and complex social network of rural communities. Public finance could become deeply rooted in a rural community based on traditional credit system. Formal credential, required to modern finance, was a

* Researcher, SSK Personal Document Research Tea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HK Research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ized form of community relationship. As with lending and borrowing money between them, Agricultural loans of NH was also received as a benefit for the residents. Therefore, the residents recognized the warranty and mortgage for NH loans as the extension of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them. NH also created a new custom that can be called 'community-based credit' through trading with village unit. The traditional and modern market-based transaction create unique credit system by accepting each other's characteristics.

